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4년 주거급여 수급가구 확대('23년 기준중위소득 47% → '24년 기준중위소득 48%)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택조사 업무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반지하 등 재취약 자가주택 거주 수급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침수방지 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3조의2 제1항 및 제2항)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이 신설됨('23.4.18.)에 따라, 법령체계에 맞게 신설 내용을 반영하는 자구 수정

- 나. 침수방지 시설 설치 근거 마련 (안 제20조제2항)
 - 주거약자를 위한 추가지원 항목(現 장애인, 고령자)에,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대한 침수방지 시설설치를 추가 지원토록 신설

- 다. 수선유지 급여 대상자 우선순위 조정 등(안 제22조제2항, 제8항)
 - 수선유지급여 신청 후 3년 내 수선시행이 안된 신규 수급자인 경우에는 연간 시행 물량을 감안하여, 우선 실시가 가능토록 규정신설
 - 공사일정 연기 등 단순한 경우에는, 재조사 절차 없이 다음해 바로 수선이 가능하도록 관련근거 신설

- 라. 신청조사 의뢰방식 개선 (안 제28조제1항)
 - 수선유지 급여 신청조사는 금융재산 포함한 소득인정액을 확인 후 신청조사 의뢰토록 의뢰방식 개선(임차급여는 종전과 동일)

- 마. 확인조사 조사간격 및 중복 대상 조정 (안 제30조제2항, 제3항)
 - 비주택, 청년, 병원입원 특례가구 조사주기 축소(연 2회→1회)하고, 부정수급·연체 의심가구로서 수시조사가 기 진행된 경우에는 차년도 확인조사에서 제외

- 바. 비방문조사 대상 확대 및 조건 완화(안 제33조제1항)
 - 동일 거주지(주소) 내 계약갱신이 진행되는 가구에 한하여, 가구수에 상관없이 비방문조사로 진행하고(종전 1인 가구만 해당), 임대료가 변경되는 경우도 비방문조사가 가능토록 완화

3. 의견제출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로 2024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3359, 팩스 044-201-5572)